

참고서면 (2020누58252)

존경하는 재판장님

문제의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 설정자체가 균형성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KBS 방송은 도
올 김용옥과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를 세웠어야 함에도 역사지식이 부족한 초보를 세워서 거
짓을 말한 방송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세웠다면 거짓이 통하지 않겠으니 초보를 상대로 거짓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공영방송
KBS에서 버젓이 방송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반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도록 왜곡하
였기에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과 자유
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에서 또한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헌법질서는 기본권의 직
접적 효력성과 통치구조의 기본권 기속성을 그 철학적 기초로 합니다. 즉 통치구조는 기본권
을 위해 존재하고 형식은 본질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질인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을 창
조하는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관인 동시에 공익을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정의에 입각한 용기있
는 재판만이 공익과 기본권을 지켜 국민의 울분을 달랠 수 있습니다.

김학성 전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자 고문이신 분은 조선일보 2021년 5월 3일자 의견광고에
서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정치권력이 미친 듯이 널털 때는 사법권력의 강력한 통제권 발
동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 국민이듯이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법원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주권자 국민의 고통과 외침이 이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님들께서 정의로
운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5월 7일

원고 전민정

서울고등법원 귀중